

캐나다의 우유수급조정 평의회

홍 보 실

캐나다라고 하면 밀의 생산을 연상케하는 경종부문의 넓은 국토 면적으로 보아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축산분야에서도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같이 보이나 사실은 그 반대로서 캐나다 농업 중에서 낙농은 산출액이 최대의 부문을 차지하나 정부로부터 대내적인 보조와 대외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1950~1960년대에는 낙농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유생산량의 증가에 반하여 소비의 정체로 탈지분유와 버터의 과잉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보조에 다액의 재정부담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국가적으로 일관된 낙농정책을 제정할 필요에 놓이게 되어 생산자, 처리가공업자, 정부 3자로 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1966년에 캐나다 낙농위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생산에 공정한 수입이 확보될 기회를 주는 것과, 소비자에게 질이 좋은 낙농제품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만큼 공급을 행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과거 10년의 경위로 추정하여 보면 정부 대표 3명, 낙농생산자 3명, 가공부문출신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농위원회는 낙농제품의 지지매입가격의 결정과 잉여낙농산품의 수출담당외에 국고보조의 교부, 가공유에 대하여는 수출차액의 보전의 과징금의 징수 등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서는 온타리오주의 예를 들어 보면 주정부기관인 온타리오 우유위

원회가 있고 그 밑에 생산자 조직인 온타리오 우유수급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다른 주의 우유수급조정위원회는 주 기관임). 온타리오 우유위원회는 온타리오주에 있어서 우유의 판매에 관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권한의 많은 것을 온타리오 우유수급조정평의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1. 우유수급조정 평의회

온타리오 우유수급조정평의회(이하 평의회)의 회원은 온타리오주내에서 낙농을 하고 우유를 생산 출하하는 사람은 모두가 회원으로서 이 평의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만 1천호의 농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운영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사는 13명, 이중 12명은 생산자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의 선거에 의합니다. 다른 1명은 처리가공업자 측에서 나오고 정부 관계의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평의회는 운영은 지배인이 담당하고 그 밑에 연락원으로서 현장지도원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11,000호의 낙농가에 13명의 현장지도원이 있으며 이중 3명은 유방염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고 다른 10명은 각기 담당지역으로 나누어져 사무실을 갖지 않고 자택에서 농가에 나가 우유생산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하

여 평의회와 생산자간의 횡적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평의회업의 업무

평의회업의 주된 업무는 우유생산량의 할당, 유가의 결정, 소비확대운동이며 매일 생산하는 낙

표 1. 급별유가(ℓ당, 지방3.6%)

급 별	가 격	비 고
1	97.61圓(일화)	남온타리오주
"	100.32圓(")	북온타리오주
2~6	82.13圓(")	평 균

※ 모든 급별에 있어서 유지율 3.6%기준임. 유지율 3.6% 과부족시 0.1%당 1圓22錢씩 가감됨.

농가의 우유는 평의회가 이를 매상(買上)하며, 평의회는 평의회와 계약하고 있는 153개사의 수송업자에 의해 매상한 우유를 집하하여 가공업자에게 납유하게 됩니다.

유가(乳價)는 표 1과 같으며 검사에 따라 음용우유생산농가와 가공우유생산농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온타리오주의 경우를 보면 11,000호의 낙농가중 급별 1급(음용우유생산농가-미국의 급별A에 해당)에 해당하면 이 농가들은 음용과, 가공용의 양쪽에 출하할 수 있으며 그 호수는 약 1만호이며, 급별 2~6급까지는 가공우유생산농가로 지정되며 현재 1,000호의 낙농가가 이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급에 속하는 농가는 가공유 원유로서만 출하할 수 있습니다.

표 2.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어서 농장의 검사내용

設備關係	<合格點>	定 義
환경전반	4 점	
건 물 적 절	2	낙농작업에 갖추어야할 구조일 것.
빈우운동장-표면	1	4 계절을 통하여 우군이 밟아서 질지 않을것(운동장바닥이 물이 잘 빠지고 굳을것)
빈우운동장 배수양호	1	물이 고이든가 미끄러지는 곳이없고 물이 잘 빠질것.
.....		
(成) 牝牛	4 점	
밀 크 겔 지 수	2	검사 6 회 중에 4 회가 밀크겔지수가 6 미만이고 전 검사가 0~10일것. 밀크겔지수 11~30의 검사 1 회에 대해 1/2 점 감점, 밀크겔검사 31~99의 검사 1 회에 대해 1 점 감점
급 사 · 급 수	2	유질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여겨지는 사료가 없고 사료조가 청결하고 신성청결한 물의 공급. 청결한 음수기
.....		
搾牛關係區域	14 점	
牛 舍		
물이 습하지않는 우상	1	콘크리트등 물이 습하지 않는 재질인 것이면 양호. 목재의 우상은 불가
계류스틀, 분뇨구, 사료조	2	빈우가 서있는데 충분한 넓이가 있을것(길이150~180cm, 폭105~120cm 정도)분뇨구의 용적은 적당하고 사료조는 청소가 용이할 것.
벽 과 천 정	1	표면이 평활하고 째이나 틈새가 없을 것.
조 명	2	밝기가 고루 적당하고 인공광이 충분할 것.
환 기	4	가감할 수 있는 환기, 후환과 적절한 공기유입구로 되어있는 것이 좋다. 우사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것.
우 상 의 넓 이	2	(成) 빈우 1 두당 약 16㎡ 정도로 비좁지 않을것. 송아지는 통로에 매어 두지 않을 것.
갈 질 (휴식처)	2	갈질, 대팻밥, 왕겨등을 충분히 갈아 채적할 것.
.....		
후리스틀, 방사우사		
운동장표면, 배수상의 넓이	2	성빈우 1 두당 약 7~9㎡의 넓이이고 물빠짐이 좋고 적절한 소의 휴식소가

			있을것.
깔	짚 (휴식소)	2	전향과 동
환	기	2	불쾌한 냄새가 없고 과도한 습기가 없고 기계적환기는 오픈손
수용구역, 통로	표면이 굽다.	2	수용구역의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기타 단단한 재질의 것일것.
밀링팔라			
물	이 습새지않는 바닥	1	콘크리트제로서 보수양호
배	수 양 호	1	경사가 완만하고 배수가 잘되고 청소가 용이한것.
벽	과 천 정	1	청결, 매끄럽고 페인트 또는 석회로 도장한 것.
조	명	1	충분한것
환	기	1	가감조절이 가능한 것.
급	수, 청소시설	1	청소를 위한 가압수, 청소용 빗자루 등 기구비품이 적절한것.

牛乳處理室과 用具.....18점

주위와 콘크리-트 板	1	주위는 청결, 정돈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지않고 우유처리입구부와 호-스출입구의 밑바닥은 콘크리트 판일 것.	
크 기	1	A급 기준에 합치하고, 충분한 작업장소를 갖고 있을 것.	
물	이 습새지않는 바닥	1	콘크리트 바닥은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잘 빠지고 냄새를 막는 장치를 갖고 있을것.
배수			
벽	과 천 정	1	벽은 물이 습새지 않는 재료가 아니면 안된다. 천정은 청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페인트 도장
문과 호스의 출입구	1	문은 자동개폐식으로 개폐가 잘 맞는것.	
조 명	1	창은 바닥면적의 10%, 전기조명은 발 탱크와 세척구역의 위에 설치한다.	
음 향·파 리 대 책	1	외부에의 개구부에는 전부 망을 친다. 문이나 창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물망이 불필요함.	
환기와 절연	1	사계절을 통하여 습기가 너무 높지 않을것	
가압하에서의 급수와 호스	1	씻어보내기나 세척은 충분한 가압수와 호스를 이용.	
온수히-타	1	온수탱크를 주장한다. 바켈용히-타는 우유용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만 인정	
2 구획 홀러보내기	1	충분한 크기가 아니면 안된다. 스펀레스나 화이바 그라스것을 주장한다.	
냉 각 시 설	1	규칙에 합치하는 적절한 냉각시설, 2°F이내에서 정확한 온도계	
고무품의 보관시설	1	건조보관할 수 있는 고무부품선반, 또는 케비넷, 부품은 2조 보관일것	
금속부품의 보관선반	1	바켈, 밀카-의 보관에 적합할것.	
금속부품의 상태양호	1	녹·녹청이 없고, 이음새가 딱 맞을것.	
고무부품의 상태양호	1	거석거석하던가 수포상의 상태가 없는것. 2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設備關係合計..... 40점

取扱關係.....〈合格點〉.....定 義.....

환경전반 4 점

건 물	1	건물의 외관은 페인트도장 보수가 잘 되어있을 것.
건물의 주위	1	쓰레기, 기계류 등 쌓여있지 않고 잡초가 없고 깨끗한 것.
구비의 제거	2	구비는 매일 우사에서 쳐내고 퇴적장소에는 파리가 발생하던가 소가 이를 밟은 일이 없도록 처리될것.

(成) 牝 牛 6 점

청결·털깎기	4	거적을 세우거나 거친 털이 없을것. 가을에 우사에 수용하는 때에는 털깎기를 하나 루즈판의 경우에는 소가 청결히 보전되므로 털을 깎을 필요가 없다.
유방의 세척		
유두침지역의 사용	1	착유전에 개체마다의 수건이나 걸레로 세척이 바람직함.
	1	착유후에 유두침지역의 사용을 주장함.

搾乳牛收容施設關係 8 점

우 사

- 바닥, 사료조, 분뇨구 2 깨끗할것. 바닥, 분뇨구 등에는 석회 또는 초석회 사용.
- 벽, 천 정 2 깨끗하고 거미줄이 없고 매년 페인트 또는 석회도장할것.
- 계류스틀·휴식처 2 소를 계류 또는 방사하는 경우 휴식소는 청결할것.
- 카우펜, 박스스틀 2 청결하고 불쾌한 냄새가 없고 추제도 깨끗할것.

후리스틀 / 우사운동장

- 벽, 천 정 1 청결, 거미줄이 없고, 매년 페인트 또는 석회도장
- 휴식소, 운동장 2 소를 청결하게 지내게 할수 있는 휴식소와 운동장
- 통 로 1 청결, 오물의 퇴적이 없는것.
- 밀킹팔라
- 바 닥 3 바닥은 세척이 잘되어있고, 흙이나 먼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 벽, 천정, 창 2 청결

牛乳處理室과 用具 42점

- 청 결·정 연 4 바닥, 천정청결, 배수구위생적, 처리실에는 불요한 재료, 용구, 약품, 살충제,
- 파 리 대 책 2 등을 뿌리지 않는다. 처리실에는 파리가 없을것.
- 기구의 청결도 26
- 바깥·기타 (8) 바깥, 바깥두부, 파킹쿨러, 여파기, 세파레타, 파이프라인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된다.
- 라이나, 파킹 밀크호-스 (8) 깨끗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이나-는 뒤집어서 점검한다.
- 진공호-스(판) 파루세-다- (8) 깨끗하고 불쾌한 냄새가 없을것.
- 유관 또는 발그랭크 (4) (6) 물달리기 선반상의 기구, 용제선반의 용기, 건조, 보관 캐비닛의 메트칼 부품, 기타 처리실에 보관하는 진공호스 등 모든 기구에 대하여 점검하고 보관상 양호.
- 세제, 소독제 2 종류와 사용 농도를 점검한다.
- 우유냉각 4 보관 온도의 냉각은 규칙에 맞지 않으면 안된다.

取扱關係合計 60點

이 급별의 분류는 앞표 2와 같이 온타리오유업국(乳業局)에서 정한 농장검사 보고서결과에 따라 판정 결정되어집니다.

이 검사는 평의회와는 무관하며 주 정부직원에 의해 1년에 1회이상 행하여지며 검사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분화되어 설비관계, 40점, 취급관계는 6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결과 80점 이상을 얻은 농가는 급별 1에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하는 우유에 대하여는 주정부에 의한 백혈구 검사, 수분검사, 세균수(우유 1ml중 10만 이하) 검사가 행하여지며, 가공업자에 의한 세균검사, 항생물질잔류검사 등이 수시로 행하여지고 유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의회로부터 100ℓ당, 30일 이내는 2 불, 60일 이내는 4 불, 90일 이내는 6 불의 과태료가 과해지

고, 90일이 되어도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우유의 출하가 정지됩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검사제도에하여서는 우사시설의 청소, 정리정돈은 물론, 우유의 관리도 청결히 하고, 유질개선에도 관심이 높아짐은 당연

하며 캐나다나 미국의 우사환경이 깨끗하고 정연함은 우리 낙농가들도 식품생산업자의 입장에 서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3. 음용우유 생산과 유가

평의회가 정하는 유가의 결정은 음용 유가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면은 기초로 생산비의 동향을 고찰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가공유가는 버터 - 및 탈지분유의 연방정부의 지지가격을 기

준삼아 결정합니다. 생산량의 할당에 대하여는 급별 1(음용유) 우유는 종래 가공공장의 규모, 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왔었으나 최근에는 시장의 판매, 유통상황에 의해 할당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유에 있어서는 가공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규칙과, 세칙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급과 조정관리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국내외의 가공유의 균형, 유지량의 균형, 유지량 등의 조정 등을 고찰한 후에 각 주에 생산수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에 알맞는 수량이 평의회로부터 농가에 할당되어 집니다. 할당제도에서 제일 제약이 엄한 사항은 음용유 생산농가에서 「定時, 定量, 定質」의 우유의 출하가의 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질상의 규격에 합격한 우유를 정기에 정량 출하하는 일로서 할당량 이하라도, 이상이라도 안되는 것으로 이를 어겼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가령 유우를 처분하여도 할당량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할당량 만큼의 우유의 출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하수량은 할당내 정량 출하가 원칙이나 할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과해 집니다. 과징금의 징수에는 두가지가 있으며 할당량 이내로 출하시는 1ℓ당 10圓90錢(日貨)이 공제되고, 할당량을 초과 출하하였을 경우에는 1ℓ당 66圓76錢(日貨)이 공제됩니다. 가공유가는 평균 80圓(日貨) 정도로 유가의 약83%가 과징금으로 공제되게 됩니다. 이 과징금은 낙농제품의 수출에 대한 차손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평의회는 1982/83낙농년에 주할당량의 98

~100%의 가공용생유에 대하여는 1ℓ당 50圓82錢(日貨), 100%를 초과한 전생산량에 대하여는 1ℓ당 58圓70錢(日貨)의 비율로 할당량초과과징금의 지불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4. 유제품 소비확대운동

낙농제품의 소비확대운동도 평의회 사업중 하나입니다. 소비선전의 매체로서는 TV, 라디오, 신문, 건물을 이용한 간판 등으로 널리 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요하는 경비는 전부 낙농가의 부담이며 이외에 그주내 우군개량 사업의 원조를 위한 비용보조를 포함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유가에서 1ℓ당 1圓44錢(日貨)을 공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표 3. 온타리오주 우유수급조정 평의회에서 공제액

구	분	금 액
수수료(평의회운영비)		29錢(日貨)
우유, 유제품의 소비확대경비		1圓09錢(日貨)
온타리오유우군개량협회지원비		1圓44錢(")

※ 1983년 9월 1일 현재 우유 1ℓ당.

우유의 농가당 할당제도는 1970년부터 행하여지고 있으며 당초는 전년도 생산량의 수준이 기준선으로 되어있고 할당량은 농가상호 매매할 수 있으나 그 거래취급은 평의회가 중간에 중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 낙농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할당량을 취득하는 데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할당량을 받지 못하면 낙농을 할 수 없음).

① 할당량이 남아 있는 농가로 부터 남아있는 양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때도 평의회를 통하여야 합니다.

② 우유할당거래소(평의회가 관할하는 주식거래소와 같은 조직)에서 매입,

그리고 이 할당량에 권리금이 있으며 권리금은 급별 1(음용유)급의 우유에서는 1일 1ℓ당 44,100圓(일하)으로서 1일 1,000kg 출하의 경영을 행하고자하면 할당량의 권리금만으로도 약 4,410萬圓(日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낙농은 조직상 엄한 계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조직을 지키고 단결하여 육성하며 낙농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외국의 낙농시찰자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 국민성과 우리의 현실을 대비할 때 감명을 받을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고는 일본 전락신보 84. 2. 10부 게재분을 역재하는 것으로 표2는 우리나라 장래를 보고 게재한 것이니 참고하였으며 하는 바이다. 역자주〉